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2236호

2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
3. 제출일자 : 2021. 2. 5.

4. 회부일자 : 2020. 2. 9.

Ⅱ. 제안이유

-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 발생 시 전자적 방법 등을 통해 학부모 위원 또는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, 위원 선출기한 및 위원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- 2.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도록 「유아교육법 시행령」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.
- 3.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중 '유치원규칙'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「유아교육법」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기 명시되어 있는 것을 중복 규정한 반면 '유치원규정'에 대한 심의 근거는 미비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함.

4. 「유아교육법 시행령」의 인용 조문이 이동되어 이를 반영하고 자 함.

Ⅲ. 주요내용

- 1."전자투표를"을"전자적 방법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 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. 이하 "전자투표"라 한다) 에 의한 투표 등을"로 수정(안 제4조제1항)
- 2. 재난,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서신, 우편, 전자투표 등을 이용하여 위원 선출이 가능하며, 기한내에 선출이 어려운 경우는 선출기한 조정 가능 조항 신설(안 제4조제6항)
- 3. 재난 시 위원의 임기개시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, 유치원운영위 원회 공백이 없도록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의 임기 연 장 가능 조항 신설 (안 제6조제4항 및 제5항)
- 4. 안 제10조제1항제1호에 의한 "유치원규칙"을 "유치원규정"으로 변경함으로써 「유아교육법」에 명시된 유치원규칙 외의 유치원규정의 제·개정에 대한 근거 조항 마련 및 상위법령 인용조문 이동 반영
- 5. 천재지변,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 소집할 여유 가 없을때에는 먼저 시행하고 사후에 지체없이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서면으로 보고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(안 제11조제 2항)

Ⅳ. 참고사항

- 1. 관계법규 : 조례안 [별첨 7]
 - 가. 「유아교육법」 제19조의4(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) 「유아교육법」 제19조의5(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·운영)
 - 나. 「유아교육법 시행령」 제22조의4(회의록 작성 및 공개)

「유아교육법 시행령」 제22조의5(위원회 선출 등)

「유아교육법 시행령」 제22조의10(심의결과의 시행 등)

「유아교육법 시행령」 제22조의12(시정명령)

- 2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. [별첨 2])
- 3. 협 의 : 감사관, 정책·안전기획관, 민주시민생활과 협의 완료
- 4 기 타
 - 가. 신ㆍ구조문 대비표 : 조례안 [별첨 1]
 - 나. 입법예고 :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(조례안 [별첨 3]), 재입법예고 생략 공문 (조례안[별첨 3-1])
 - ※ 기 입법예고(2020.7.16. ~ 8.4.)이후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단순 집행(조문이동)에 해당되어 재입법예고 생략
 - 다. 부패영향평가: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(조례안 [별첨 4])
 - 라. 성별영향평가: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(조례안 [별첨 5])
 - 마. 학생인권영향평가: 학생인권영향평가 결과통보서(조례안[별첨 6])
 - 6) 관계법규: 조례안 [별첨 7]

Ⅴ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김창범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조례안은 2021년 2월 5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 2236호로 발의되어 2021년 2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개정조례안은 「유아교육법 시행령」의 개정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교직원 전체회의, 학부모 전체회의 등을 개최할 수 없을 때의 위원의 선출방식 및 선출기한 조정, 임기개시일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가.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

○ 동 조례안은 「유아교육법 시행령」제22조의51)의 개정사항을 반영한

^{1)「}유아교육법 시행령」

제22조의5(위원의 선출 등) ① 국립、공립 유치원의 장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.

②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.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, 우편투표 또는 전자적 방법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)에 의한 투표 등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의 규모·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.

④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.

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,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.

⑥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학부모위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.

⑦ 국립·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유치원과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 산상의 권리·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.

것으로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3조제1호2)에 따른 재난이나 불 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, 교직원 전체회의 등을 통하여 위원 을 선출하기 어려운 경우 우편투표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해당 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.

○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 등 학부모 전체회의 등을 개최하기 어려운 여건에서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치원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바, 개정 취 지 면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나. 주요 조문별 검토

- 1) 안 제4조제1항 및 제6항
- 안 제4조제1항은 현행 '전자투표'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「유아교육법 시행령」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'전자적 방법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. 이하 "전자투표"라 한다)에 의한 투표'로 구체화하였으며.

같은 조 제6항은 코로나19와 같이 국민의 생명, 신체,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재난 상황으로 인해 유치원의 학부모 전체(대표)회의, 교직원 전체회의 등을 개최하기 어려울 경우 서신, 우편, 전자

^{2)「}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^{1. &}quot;재난"이란 국민의 생명、신체、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
가. 자연재난: 태풍, 홍수, 호우(豪雨), 강풍, 풍랑, 해일(海溢), 대설, 한파, 낙뢰, 가뭄, 폭염, 지진, 황사 (黃砂), 조류(藻類) 대발생, 조수(潮水), 화산활동, 소행성、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、충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

나. 사회재난: 화재·붕괴·폭발·교통사고(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)·화생방사고·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또는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,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

투표 등 비대면 방식으로 위원을 선출하거나 선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- 이는 현재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한편 향후 다양한 감염병에 의한 재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, 재난 상황에서도 정상적인 유치원운영을 지속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.
- 2) 안 제6조제4항 및 제5항(위원의 임기)
- 안 제6조제4항은 안 제4조제6항 후단에 따라 선출기한이 조정된 경우 차후 선출된 위원의 임기개시일 역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안 제4조제6항과 연동되는 규정입니다. 또한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선출 기한의 조정으로 기존 위원의 임기가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 제6조제4항 및 제5항은 선출기한의 조정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에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□ 이상으로「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